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의 불일치서류  
거절의 적시성에 관한 연구**  
-*Federal Bank Ltd. v. VM Jog  
Engineering Ltd.*의 사건에서의 인도 최고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imely Refusal to Accept Discrepant  
Documents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with a special emphasis on *Federal Bank Ltd. v. VM Jog Engineering  
Ltd.*, Indian Supreme Court Decision-

한 재 필\* Jae-Phil Hahn

〈목 차〉

- I. 서 론
- II.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점검 의무
- III. *Federal Bank Ltd. v. VM Jog Engineering Ltd.* 사건의 개요
- IV. 법률적 분석
- V. 종합 평가 및 결론

주제어 : 통례적 시간; 불일치서류; 선의의 소지자; 지급금지; 사기의  
원칙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 I . 서 론

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 UCP)이 1962년 제 2차 개정을 통하여 신용장 거래의 통일적 관습을 제공하는 규칙으로 재탄생 되어짐에 따라 화환신용장 거래는 가장 중요한 무역대금 지급 수단으로서 국제무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sup>1)</sup> 신용장을 발행하는 발행은행의 주된 의무는 UCP 500 Article 9<sup>2)</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시된 약정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등의 약속을 제공하는데 있다. 즉,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임으로.<sup>3)</sup> 본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은 신용장거래를 유발한 근거거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다만 신용장에 의하여 지정된 제출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 (terms and conditions)과 일치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뭇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제출된 서류와 신용장과의 일치성 여부 판단은 무역금융법(trade finance law)분야에서 과거 수년간 형식(forms)과 실체(substance)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부분이라 할 만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sup>4)</sup>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차세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印度 : India)의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한 은행의 서류심사의무 문제를 다룬 *Federal Bank Ltd. v. VM Jog Engineering Ltd.* [2002] LRI 204 (Sup. Ct. of India) [India]의 사건에 있어서 인도법원의 판결을 분

- 
- 1) 한재필, “신용장거래에서의 ISBP에 관한 연구-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 19권 제2호, 20004, p.134.
  - 2) UCP 500 Article 9 (a) : An irrevocable Credit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Nominated Bank or to the Issuing Bank an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re complied with : (1).....to pay at sight.....
  - 3) UCP 500 Article 4.
  - 4) Richard Morris, Consultant, Deacons Graham & James, “Discrepancies : Has UCP 500 Wrought Any Improvement ?” ([http : //sunzi1.lib.hku.hk/hkjo/view/15/1502320.pdf](http://sunzi1.lib.hku.hk/hkjo/view/15/1502320.pdf))

석하여 봄으로써 인도은행의 신용장거래 관습과 은행의 서류점검의무의 적시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인도법원의 불일치서류의 거절에 관한 판례는 UCP의 규칙과 사기에외에 관련된 광범위한 법원판례를 포괄하고 있어서 서류심사담당자는 물론 법률가 및 학자에게 유효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심층적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sup>5)</sup>

지금까지 신용장거래에서의 불일치서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류심사의 기준’ 및 ‘ICC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클레임처리’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불일치서류에 대한 발행은행의 처리의무에 관한 법리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류심사의 연구범위에서 이들 연구내용과 부분적으로 동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연구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전자는 ‘서류의 심사기준 및/또는 원칙’에 관한 연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발행은행의 ‘서류심사요건에 따른 의무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인도법원에서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UCP 400 및 500 그리고 기타 관련 법원판례분석에 의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연구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세부적 연구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음으로 차이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었음을 밝힌다.<sup>6)</sup>

5) 한국의 법원판례는 인도의 경우에서와 같이 불일치서류 거절에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루어진 판례는 없는 듯 하다. 다만 UCP 500 Art. 14(d)와 (e)에 의한 불일치서류의 인수거절의 적시성과 서류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판례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다2249 판결] 참조

6) 지금까지 발표된 서류점검의무와 관련한 논문과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강 원진, “신용장조건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클레임처리상의 문제점”, 「국제상학」 제9권 제2호, 1994 (법원의 판례와 ICC의 의견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서류의 일치성판단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조건 불일치성에 대하여 은행의 클레임에 대한 결정 및 통지에 대한 처리와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서 정두, “화환신용장 거래에서의 서류수리거절권의 상실사유”, 「무역상무연구」 제10권, 1997 (화환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전통적인 판례와 통설, UCP 500에서의 관련조항과 ICC의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하자서류에 대한 수리거절권이 상실된 현실적 사유 등을 연구하고 국내 법원의 판례를 평석하고 있다); 이 천수,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불일치서류처리상

## Ⅱ.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점검 의무

### 1. 은행의 서류점검 의무와 문제점

서류심사과정은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조건에 문면상(on their face) 일치여부는 UCP 500 Article 13 에 의거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의 제 문제”, 「국제상학」 제12권 제2호, 1997. (은행에 제시되는 서류의 일치성판단 기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처리방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강 원진,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기재내용과의 일치성 논쟁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1호, 1999. (신용장조건에의 일치성판단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특히 상업송장상의 기재내용과 여타서류와의 연계성에 관하여 법원의 판례와 ICC의 공식의견을 분석하여 그 심사기준을 재정립하는 연구를 하였다); 강 원진/이 상훈, “신용장거래당사자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1999. 11 (신용장의 거래당사자가 신용장 및 UCP 500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례와 ICC의 유권적 해석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의무이행 원칙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한 주섭,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15호 제1호, 2000.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의 원칙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 이에 관련된 판례를 연구하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거래의 원칙에 관한 국제표준실무관행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강 원진, “신용장조건과 서류심사의 기준검토”. 「무역상무연구」, 제13호, 2000 (서류의 심사기준과 연계하여 은행의 실제 심사 시 주의의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서류 상호간의 모순성, 무서류조건 및 불일치서류의 처리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대우, “신용장의 서류심사상 Fraud Rule의 적용사례”,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2002 (국내에서 발생한 신용장거래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Fraud Rule의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사기의 입증책임정도를 가름하는 원칙을 연구하였다); 강 원진, “신용장심사를 위한 ICC국제표준은행관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2003.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의견과 UCP 500의 관련조항 및 ISBP의 각조항 등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ISBP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조문별로 고찰하고 적용상의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일반원칙을 연구하였); 강 원진, “2002제정 ICC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서류심사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2005. (ISBP를 신용장심사과정에서 생성된 법원의 판례 및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 의견과 비교하여 ISBP와 병행하거나 상충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한 재필, 전게서 (UCP 500과 ISBP를 연관하여 그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용장거래에서의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의 지침을 창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요인 및 환경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is Articles...

즉,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상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 문면상의 일치성에 관한 것이며, 은행은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신용장에서 규정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관례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정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문면상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본 신용장통일규칙의 조문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표준은행관행'<sup>7)</sup>이란 개념은 은행이 통례적인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를 심사할 의무를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실한 주의를 요하는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통례적인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범위(scope)를 결정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은행은 서류를 점검하는데 단순한 기계적 방식에 의한 서류심사가 아닌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되어 신용장의 유용성 및 실용성을 제고한다는 목적하에 제출된 서류에 불일치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본 신용장거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이 아닌 사소한 것인 경우 -예를 들면 서류상에 명백한 타자상의 오류 (obvious typographical errors)등-에는 은행은 그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융통성 있는 원칙은 UCP가 추구하여온 은행간 신용장 관습의 통일화라는 목표와는 상치할 수 있는데, 이는 상이국의 법원이 본 원칙에 의거 서류의 불일치를 판단하는데 통일적이고 일치한

7) ISBP에 대하여는 별도로 UCP 500의 추록으로 발간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복잡하여 현재까지 국제상거래의 관행으로 정착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점을 향유한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회사의 이름과 관련한 불일치 서류에 대하여 상이국간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판례인 *United Bank Ltd. v. Banque National de Paris*<sup>8)</sup>와 미국의 판례인 *Bank of Montreal v. Federal National Bank*<sup>9)</sup>사건에서는 상치된 입장이 여실히 드러난다.<sup>10)</sup>

이러한 각 법정 사이의 불일치한 상당일치 원칙 적용은 법원에게 통례성 (reasonableness), 형평성 (equity), 신의 성실성 (good faith)에 위배되지 않는 융통성 있는 이탈을 허용하고 있음으로 이 원칙으로는 UCP가 목표하였던 서류점검과 관련한 은행이 취하여야 할 기능적 표준은 물론 일반적 표준관행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sup>11)</sup>

‘국제표준은행관습’에 의거한 불일치서류의 판단은 개개 사건별 정밀분석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분석 방식이 일반기준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은 신용장거래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되어, 은행 자신의 판단보다는 법률자문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한 유보의 조건으로 지급을 이행, 신용장 거래의 질을 격하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신용장관련 소송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비용증대를 수반하는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되어 신용장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sup>12)</sup>

8) [1992] 2 S.L.R. 64.

9) 622 F. Supp. 6 (1986)

10) 각주 6)의 판례에서 싱가포르의 대법원은 "P.S. (Pte) Ltd."와 "P.S. Ltd."로 다르게 회사 이름을 명기한 서류는 불일치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미국의 판례인 각주 7)의 판례에서는 Blow Out Products Ltd."라는 회사가 자신을 신용장상에 "Blow Out Prevention Ltd."로 잘못 명기하였고, 은행은 신용장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회사의 원명으로 기입한 환어음을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신용장과 환어음에는 불일치한 회사명이 각각 기입되어지게 되었으나, 미국의 법정은 (이 사건에서는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이러한 불일치는 계약의 목적을 무효로 하는 불일치사항이 아님으로 서류는 인수 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싱가포르 판례와 비교할 때 매우 유연한 상당일치의 적용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11) 한 주석, 「최신 신용장론」, 1993, 동성사, pp.503-504.

12)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로 인하여 지급 거절되는 비율은 다음 자료에서 살펴보

## 2. 은행의 서류점검 기간

은행의 서류심사원칙과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상기한 서류 심사에 허용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지난 제4차 개정까지만 해도 은행은 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통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적절한 시간”(reasonable time)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뿐 은행마다 관행이 다르므로 종종 클레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제5차 개정에는 이를 명확히 하여 서류를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7일간의 서류심사 허용기간은 최대의 기간으로서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의 규정에 있어 ICC의 개정작업반은 “통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적절한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개별적인 거래”(individual transaction)의 여건에 따라 한(1)시간 또는 수일(several days)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서류심사에 있어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지급거절이 허용되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신용장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개정안 UPC 600에서는 이 기간을 5 은행영업일로 단축하여 은행의 의무이행을 신속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볼 만하다.<sup>13)</sup>

---

면 유럽의 경우 50%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몇몇 지역은 이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Margaret L. “Moses of Counsel”, Connell Folly Attorney at Law, undated.

13) 한 재필, “UCP 600을 위한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연구-2005. 11월 1차개정완결초안을 중심으로-”, 국제상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06. 참조.

### Ⅲ. *Federal Bank Ltd. v. VM Jog Engineering Ltd.* 사건의 개요

#### 1. 신용장의 개설 및 조건

VM Jog Engineering Ltd. (Bombay, India, 매수인, 신용장발행의뢰인)는 철강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Bank of Maharashtra (Pune, India, 발행은행)에서 Jaswant Steel (Nagpur, India, 매도인)를 수익자로 하고 Federal Bank Ltd. (Pune, India)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하는 90일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을 개설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는 국제상거래에서 대중을 이루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신용장거래는 인도의 국내거래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익자가 발행하고 계약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접수되었고 또한 동 물품에 관한 현장에서의 수령일자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담당자가 서명한 Delivery Challans-cum-invoice<sup>14)</sup>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운송서류는 요구되지 않았다.

#### 2. 매입은행의 발행은행에의 서류조회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발행은행에 송부하여 서명의 인증과 서류의 일치성확인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인도의 법원기록에 따르면, 그 서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

“신용장에 첨부된 서류는 1998년 2월 19일자의 5부의 송장과 5부의

14) 인도 국내거래에서 부가가치세(VAT) 증수목적으로 인도의 Excise Tariff Code에 의하여 물품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송장이다.



delivery challans이다. 5부의 delivery challans은 매수인/발행의뢰인의 대리인자격의 Mr. P. Waghmode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2부는 각각 1998년 2월 21일 및 2월 23일자에 발행의뢰인의 부사장의 연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delivery challans 5부 전체에는 발행의뢰인의 회사관인이 필하여져 있음이 발견되었다. delivery challans에는 Mr. Waghmode의 배서로서 그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수령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 3. 발행은행의 답변, 서류매입 및 반송

#### (1) 발행은행의 답변 및 매입은행의 서류매입

매입은행의 조회에 대하여 발행은행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폐은행은 1998년 5월 20일자 만기일서류가 양호한 상태로 접수되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신용장 1/98은 1998년 5월 20일에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 폐은행은 신용장상의 서명을 인증 확인하며 신용장상의 서명자는 동 신용장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 자였음을 확인한다.”

매입은행은 발행은행의 답변을 근거로 제시된 서류를 매입확인하고 발행은행에 송부하였다.

#### (2) 발행은행의 서류반송

발행은행은 2개월이 지난 후에 해당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통보하며 해당 서류를 매입은행에 반송하였다 :

매입은행은 (1)약정품이 양호한 상태로 접수되었으며 현장에서의 물품수령일자표기를 신용장의 약관 10번에 명시한 바에 의하여 확인하기 위한 프로젝트 담당자서명 수익자발행 delivery challan-cum-invoices와 (2)신용장의 약관 3번에 의한 모든 관련 화물자동차운송수취증(motor transport receipts)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발행의뢰

인을 대리하여 물품을 수령할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다. 1998년 5월 17일에 발행의뢰인의 프로젝트 관리인 Mr. Bhapkar가 수익자의 공장을 방문하였는바 단지 654톤의 철강재가 계정상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으로써 전량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654톤이 아니고 523톤이 공급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다투고 있다. 1998년 5월 18일에 발행의뢰인은 누군가가 서류를 변조하여 발행은행에 제시하였다고 통보하여 왔다.

#### 4. 발행의뢰인의 청원

발행의뢰인은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수익자가 발행의뢰인명으로 불법적으로 요구불 증빙서에 사기로 배서하여 서류를 변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Mr. P. Waghmode의 명의자는 매입은행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발행의뢰인을 위한 근무자 명단에도 없다.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임시 지급정지를 법원에 청원하여 허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에 대금상환을 금지 당하게 되었다. 매입은행은 이에 대하여 사기의 주장이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사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바 없음으로 지급증지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법적대응에 나섰다. 그런데 예심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으며 항소법원에도 이를 확정하였다. 이에 매입은행은 최고 법원에 상소하였으며 지급정지명령이 철회되는 역전의 판결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 IV. UCP의 적용과 관련 법리의 분석

### 1. UCP의 적용

인도의 법원은 UCP 400이 본 사건의 신용장에 적용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UCP에 의한다”(subject to UCP)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UCP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도의 법원은 UCP는 신용장실무거래에서 상적 관습 및 관행으로 인식되며 대부분 극히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통법 (common law)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부분은 UCP의 통일적 규칙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하여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 진다.

#### (1) 서류심사 요건

발행은행의 서류심사는 타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 연지급확약, 환어음인수 또는 서류의 매입을 위한 조건부수권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속성 및 엄밀일치 또는 상당일치의 논리를 기초로 하여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에 대하여 만 제한적인 심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 1) 통례적인 시간

인도의 법원은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통례적인 시간이 경과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다. 영국법원은 은행관례에 따라 서류심사를 위한 통례적인 시간은 3영업일로 인식하고 있다.<sup>16)</sup>

15) [2002] 4 LRI 204 (Sup. Ct. of India) [India], 2004, Institute of Int'l Banking Law & Practice

16) *Banker's Trust Ltd. v. State Bank of India*, [1991] 2 Lloyd's Rep. 443 (C.A.) (Eng.) 사건에서 신용장과 관련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는 967개에 달하였으며 이를 심사하기위한 적절한 통례적인 시간은 3 영업일이라고 영국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용장제도는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복잡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러나 UCP에 의하면 4차 개정과 5차 개정 규칙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UCP 400 Article 16(c)에서 발행은행은 접수한 서류를 수리 또는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례적인 시간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확실한 시간을 가늠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심사 서류의 여건에 따라서 그 적절성 및 통례성의 판단기준이 설정된다고 할 것이다.<sup>17)</sup>

한편 UCP 500 Article 13(b)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통례적인 서류심사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의 서류심사에 참여하는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지정은행은 각각 적절한 통례적인 시간을 서류심사를 위하여 향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장 7은행영업일이라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류심사를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7은행영업일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sup>18)</sup>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있는 경우)이 적절한 통례적인 기간 또는 최장 7은행영업일 이내에 불일치서류의 인수거절을 위하여 모든 불일치사항을 지적하고, 상환청구은행<sup>19)</sup>(remitting bank)에 그 서류를 보관 또는 반송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다면 이미 상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에 이자를 포함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sup>20)</sup>

---

있으며 이는 신용장제도의 약점이라 할 것이다. 수입업자가 신용장의 요구조건으로 복잡성을 유도할 수 있다면 수출업자는 이를 이행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수입업자는 교섭력이 더욱 강화되는 이점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 17) UCP 400 Article 16 (c) : The issuing bank shall have a reasonable time in which to examine the documents and to determine as above whether to take up or to refuse the documents.
- 18) UCP 500 Article 13(b) :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or a Nominated Bank acting on their behalf shall each have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the documents....
- 19) 상환청구은행은 지급, 연지급확약, 인수 및 매입은행 등의 지정은행이 각기 신용장에서 수권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유되는 재무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에 청구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 2) 발행은행의 의무 - 통례적인 시간의 경과

본 건에서 수익자는 발행은행이 제시된 서류의 심사를 위한 적절한 통례적인 시간 이내에 불일치사항을 거론하여 서류의 인수거절을 통보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UCP 400 Article 16<sup>21)</sup>의 제외법칙(preclusion rules)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청원하였다. 인도의 법원은 발행은행이 그 서류를 적절한 통례적인 시간 이내에 거절 통지와 더불어 반송 또는 제시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발행은행이 그 서류의 진정성을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천명하였으며 이는 보통법의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에 신용장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 3) 발행은행의 의무 - 서류의 심사원칙

인도의 법원은 은행의 서류심사원칙과 관련하여 ① 서류의 문면상 일치성, ② 적절한 주의, ③ 일반적인 과정을 통한 육안검사의 3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은행의 서류심사는 그 근거계약의 이행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다만 제시된 서류만을 근거로 문면상의 일치성 여부를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특수 검토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방식으로 육안검사에 의하여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다<sup>22)</sup>. 그

- 
- 20) UCP 500 Article 14 (i) : If the Issuing Bank...must give notice to that effect ....not later than the close of the seventh banking day...; (ii)Such notice must state all discrepancies in respect of which the bank refuses the documents and must also state whether it is holding the documents at the disposal of or is returning them to the presenter. ; (iii)The issuing bank...shall then be entitled to claim from the remitting bank refund, with interest of any reimbursement...
- 21) UCP 500 Article 14 (f); If the Issuing Bank and/or Confirming Bank, if any, fail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or fails to hold the document at the disposal of, or return them to, the presenter, the Issuing Bank and/or Confirming Bank, if any, shall be precluded from claiming that the documents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Credit.
- 22) UCP 500 Article 13 & 14 참조 ; *Gian Singh & Co. Ltd. v. Banque do L'Inochine*, [1974] 1 W.L.R. 1234 (p.C.) (Eng.)에서 영국의 귀족원 법관 Lord Diplock는 For

러므로 은행은 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2. 사기에외의 검토

발행의뢰인/수입업자는 수익자/수출업자가 지급요구 증빙서에 발행의뢰인/수입업자의 대리인을 가장하여 허위로 배서함으로써 서류 변조의 범행을 저질렀음으로 사기라고 지적하고 법원에 지급정지를 청원하여 예심법원과 상소법원에서 지지의 판결을 받아 내었으나 최고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신용장거래에서 사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 (1) 사기의 예외와 사기의 원칙

신용장거래에서 사기(fraud)의 사실이 명백하게 들어나는 경우, 독립.추상성(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의 예외로 인정되어 은행은 이를 근거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기 예외(fraud exception) 또는 사기 원칙(fraud rule)이라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된 서류가 실제 선적품과 관련하여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근거가 되는 매매거래에 사기가 존재한다면 “독립.추상성의 예외”에 의한 “사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sup>23)</sup> 사기의 원칙과 관련하여

---

the proposition that what is required is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on their face and “that in the ordinary course, visual inspection of the actual documents presented is all that is called for.”라고 판결요지를 제시하였다. ; 한편 Peter Ho, Barrister at Law “Documentary Credit : The Fraud Exception” Hongkong Lawyer, January 1997, p. 32에서 Lord Diplock가 주장하는 신용장거래에서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 “Lord Diplock based his reasoning on the proposition that, as between an issuing bank and a buyer, the issuing bank is under a contractual duty to examine with reasonable care all documents presented in order to ascertain tha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accordance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nd, if they do so appear, to pay the seller/beneficiary.”

23) Michael Rowe, Letter of Credit, Euromoney, 1985, pp. 149-150.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거래라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파렴치한 매도인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Sztejn* 규칙을 창출한 뉴욕법원의 판례는 유명하다.<sup>24)</sup>

미국의 신용장관련법 UCC Art. 5-114(2)(b)에서는 “신용장거래의 대고객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는 발행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서류의 문면상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사기, 위조 또는 기타 하자가 있음을 통고하여 왔음에도 어음 또는 지급요구를 인수할 수도 있으나 법원은 이의 인수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5)</sup> 미국의 법률적 관점은 은행은 서류의 심사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은행이 사기의 위험을 간과하여 지급을 이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기의 범위는 ①수익자가 사기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②이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은행의 입장에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취소불능의 약속(irrevocable undertaking)을 거절한다는 것은 국제대금결제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사기의 의심이 만으로는 사기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기 원칙’이 UCP 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나라마다 그 적용 기준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 (2) 서류의 변조에 의한 사기에 대한 면책

본 사건에서 법원은 UCP 400 Article 17의 규정을 인용하여 은행은

24) *Sztejn v. Henry Schroder Banking Corporation*, 31 N.Y.S. 2d 631 (Sup. Ct. 1941)

25) UCC Article 5-114(b) : “in all other cases as against its customer, an issuer acting in good faith may honour the draft of demand for payment despite notification from the customer of fraud, forgery or other defect not apparent on the face of the documents but a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may enjoin such honor.”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서류의 문면상 사기의 사실이 명백히 들어나 있지 아니하는 한 서류의 하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완고히 하고 있다.<sup>26)</sup> 인도의 최고법원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더라도 ①사기 및 ②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은행의 지급의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sup>27)</sup> :

본건에서 발행의뢰인/원고가 이들 2가지 예외에 대하여 추정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 [인도법의 준거규정<sup>28)</sup>]에 의하여 임시적 지급 정지를 발령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보증(bank guarantee) 또는 신용장은 매도인/수익자와 매수인/발행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주 계약과는 독립적이다. 이는 UCP 400 Article 3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sup>29)</sup>

- 26) UCP 400 Article 17과 UCP 500 Article 15에서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에서 전혀 변경 없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Banks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ness, falsification or legal effect of any document(s), or for the general and/or particular conditions stipulated in the document(s) or superimposed thereon; nor do they assume any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description, quantity, weight, quality, condition, packing, delivery, value or existence of the goods represented by any document(s), or for the good faith or acts and/or omissions, solvency, performance or standing of the consignors, the carriers, the forwarders, the consignees or the insurers of the goods, or any other person whomsoever.”
- 27) [2002] 4 LRI 204 (Sup. Ct. of India) [India]
- 28) Civil Procedure Code, Order 7 Rule 11 - Cause of action - Fraud - Non-supply of goods - Suit for recovery based on the allegation of fraud filed by the bank - No allegation in the plaint of presentation of any forged or fraudulent document to the bank - Mere allegation of fraud because of non-supply of goods will not amount cause of action to get over an objection under Order 7 Rule 11 CPC - Non-supply of goods may be because of variety of reasons, but it will not itself amount to fraud - No other allegation in the plaint that the goods were not deliberately shipped or an attempt was made to pass off rubbish as the goods order for - Plaint held liable to be rejected under Order 7 Rule 11 for non-disclosure of cause of action - Letter of credit was without recourse to the invoice value [Paras 15, 17, 20, 21 and 25]
- 29) UCP 400 Article 3 : Credits, by their nature, are separate transactions from the sales or other contracts(s) on which they may be based an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s(s),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such contract(s) is included in the credit.



취소불능보증 또는 신용장에서 매수인/발행의뢰인은 매도인/수익자가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수락하도록 할 수 없다. 은행의 입지에서 수익자가 은행보증 또는 신용장의 조건에 추정적으로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다면 현금화 요구를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행은행은 단순히 매수인/발행의뢰인으로 부터 계약위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오는 사실 만으로 지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발행은행은 서류가 제시되면 이를 통례적인 주의를 기울이어 심사하여 야 한다. 발행은행의 의무는 제시된 서류와 관련하여 매도인/수익자와 매수인/발행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위반이 연루된 분쟁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 (3) 사기에 대한 지급정지조건

본건에서 인도의 최고법원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매수인/발행의뢰인이 지급정지를 수락하도록 하려면 그 은행이 사기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은행에 확정적 사기의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이들 계약상의 분쟁은 소송 또는 중재의 방식에 의하여 수출입계약당사자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사기의 의심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에 의하여 지급거절이 허용된다면 국제상거래에서 은행의 신용 및 유용성은 훼손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sup>30)</sup>

30) *Sztejn Case* 관련 뉴욕 최고법원의 주심판사 *Shientag*는 신용장거래에서 사기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기의 법칙을 최초로 적용하여 *Sztejn Rule*을 창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는 “신용장은 (1)수출입업자 간에 체결한 수출입계약과는 독립적으로 발행은행은 물품이 아니고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할 것이라는 합의를 하고 있으며 (2)이러한 원칙은 신용장이 무역금융의 수단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3)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용장의 목적은 수출업자가 그가 선적한 물품에 대하여 즉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은행이 그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수리하기 전에 수출입업자 간에 발생한 선적물품의 품질에 관한 분쟁에 말려들어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제시서류를 조사하여야한다거나 또는 허용한다면 이는 그들의 상사거래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가장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수출입업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면 신용장 자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신용장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적절한 형식으로 제시된 환어음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을 지

본건에서 인도의 최고 법원은 영국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수익자가 사기의 주범이라면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지급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은행이 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천명하고 있다.<sup>31)</sup> 이러한 엄격한 사기증거의 기준은 영국법원이 택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sup>32)</sup> 영국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의 법원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의 법원은 다음의 상황에 의한 사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법원에 청원하였다면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sup>33)</sup> 즉, (1)상품이 단순히 품질이 열악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서류가 사기를 피한 수익자와 동일한 입지에 있는 자의 수중에 있는 경우, (3)은행에 환어음 및 지급을 위한 서류가 제시되기 전에 사기의 통지가 주어졌을 경우 그리고 (4)은행이 타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지급을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체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문에 추가하고 있다.

- 31) 사기를 증명하는 것, 특히 신용장하에서의 은행의 지급만기일이 도달하기 전에 사기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사기원칙의 적용은 어렵게 된다.
- 32) *Bolivinter Oil SA v. Chase Manhattan Bank NA* [1984] 1 A11 ER 351(Eng. C.A.)에서 영국의 법원은 수익자가 저지른 사기를 은행에서 인지하고 있다면 이는 “총체적 예외”(wholly exceptional)의 사건임으로 지급금지가 발령되어야 하지만 사기의 사실과 은행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확정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기의 예외에 대한 판결은 *Engineering Ltd. Barclays Bank International Ltd.*, [1978] Q.B. 159 (Eng. C.A.)에서 영국 귀족원의 법관 Lord Browne는 사기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기가 확정적이어야 함으로 지급금지를 은행에 발령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Discount Records Ltd. v. Barclays Bank Ltd.* [1975] 1 W.L.R. 315 참조.
- 33) [2002] 4 LRI 204 (Sup. Ct. of India) [India]

### 3. 지정은행의 사기에의

본건에서 인도의 법원은 지정은행의 지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

만일 매입은행이 단순히 추심은행이거나 수익자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발행은행이 추심은행에 지급을 이행하기 이전에 제시된 서류가 변조되었거나 또는 사기성이 있음을 이유로, 발행의뢰인/수입업자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왔다면, 추심은행은 발행은행에 추심대금지급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정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서류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수권된 청산을 근거로 상환을 요청하였다면, “그 은행은 선의의 소지자(holder in due course)의 입지에 있음으로 이에 상환을 억제하려는 발행의뢰인/수입업자의 제소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sup>34)</sup>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정은행으로서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확약, 인수, 매입을 위하여 수권되어 있음으로서 서류의 “선의의 소지자”의 입지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 4. 법원의 판결

본 사건에서 인도의 법원은 매입은행이 사기의 사실에 대하여 인지한바 전혀 없으며, 또한 1998년 3월 20일에 접수된 서류를 발행은행에 송부하여 환어음의 유통가능성을 조회하는 주의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발행은행은 1998년 3월 23일에 해당 서류를 인수하여 지급을 위한 정리(clearance)를 하였으므로 그 후 2개 여월이 지난 1998년

34) Sztejn Case에서의 판결에서 뉴욕최고법원 주심판사 Shientag J.판사는 “선의의 소지자원칙“ (principle of holder in due course)을 적용하여 “만일 청원서에서 문면상 지급을 받기 위하여 환어음을 제시한 은행이 서류의 선의의 소지자로 나타나 있다면 신용장발행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청구는 실사 주요 거래관계가 사기로 점철되어 있다하더라도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그러나 추심은행은 선의의 소지자가 아니고 수익자의 비용에 의한 대리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서류와 관련하여 사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청원되어 있다면 이의 철회를 위한 요구는 거절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월에 이르러 새로이 면밀한 검토결과 신용장의 조건에 불일치서류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발행의뢰인이 그렇게 통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입지에 서있지 못하다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매입은행은 “선의의 소지자의 원칙”에 의하여 추정적으로 선의의 소지자의 입지에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발행은행이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위하여 허용되는 통례적인 기간은 영국법원의 관점에서는 3영업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UCP 500의 경우 서류를 접수한 다음 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최장 7은행영업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서류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무려 2개월여가 지난 후에 서류의 불일치사실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는 UCP 400의 원칙이나 국제상거래관습 및 관례에 너무도 일탈되었으므로 “발행은행은 서류에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지지되어야 한다.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지정은행이 서류를 접수하고 통례적인 시간 내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은 주지한바와 같다. 만일 불일치가 존재하여 그 서류를 인수 거절하려고 결정하였다면 통례적인 시간 내에(UCP 400 Article 16 (c) 또는 7은행영업일 이내(UCP 500 Article 14 (d)(i))에 거절의 사실을 서류의 제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주어진 기간내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추후에 그 서류에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법리적으로 “금반언설”(estoppel theory)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금반언이란 본래 영미법상의 원칙으로서 기록, 날인, 행위, 표시 및 침묵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어느 특정 사실상태를 신뢰하도록 하고 그 신뢰에 의하여 그 이전의 지위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였다면 전자는 후자에게 다른 사실상태가 동시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미루어 볼 때 본 신용장의 조건에의 불일치사실을 통례적인 시간 및/또는 7은행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유효하다는 UCP상의 규정

은 “침묵에 의한 금반언”(estoppel by silence)에 해당하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침묵에 의한 “금반언”은 어느 당사자가 조기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와 기회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그의 침묵으로 인하여 특정 사실을 신뢰하도록 하였다면 이에 반하는 어떠한 다른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함으로 이를 거절하려고 할 때에 통례적인 시간 이내 또는 최장 7은행영업일 이내에 이를 서류의 제시인(presenter)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만일 이 기간에 서류의 거절이 통보되지 않았다면 서류를 제시한 수익자는 은행이 서류를 수리 할 것을 신뢰하게되며 이에 반하는 행동, 즉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는 침묵에 의한 “금반언설”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주어진 기간 내에 서류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통지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2차, 3차 등의 순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불일치사항을 각각 거론,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역시 1차 불일치사항을 거론하는 것으로 다른 불일치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침묵에 의한 금반언설”이 적용된다.<sup>35)</sup>

## V. 종합 평가 및 결론

### 1. UCP의 적용

본건에서 인도의 법원은 신용장거래에서 ICC의 제5차개정 UCP 500

35) A.G. Davis,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3rd ed., Pitman Press, 1963, p. 69. ; <http://www.nolo.com/definition.cfm/Term/> : “Estoppel by silence” - A type of estoppel that prevents a person from asserting something when she had both the duty and the opportunity to speak up earlier, and her silence put another person at a disadvantage.

이 이미 개정되어 활용되고 있음에도 UCP 400을 준거규칙으로 인용하고 있음은 이해적이라 할 것이다. UCP 500이 이미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1998년 2월 19일에 신용장이 발행된 사건에 인도의 법원이 UCP 400을 인용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발행은행은 신용장발행에서 UCP의 어느 것이라도 준거규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UCP에 관한 조항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건에서 인도의 법원이 새로운 UCP 500이 아닌 UCP 400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대 밖의 특이한 사례라고 사료된다.

## 2. 순수한 국내매매 - 신용장거래

본건은 인도 Bombay 소재 VM Jog Engineering Ltd.(발행의뢰인/매수인)와 인도 Nagpur 소재 Jaswant Steel(수익자/매도인) 사이에 순수 국내 물품매매거래로서 이에 참여하는 은행도 인도국내 소재은행이다. 신용장발행은행은 인도 Pune 소재 Bank of Maharashtra이며 매입은행도 인도 Pune 소재 Federal Bank Ltd.으로서 모두 인도계은행이다. 일반적으로 국내거래는 국제거래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발행된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이와 연계하여 발행되는 내국신용장이거나 양도신용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에서와 같이 순수한 국내거래에서 신용장이 활용되는 예는 한국의 경우 그리 흔하지 않은 사례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국내 거래에서도 신용장을 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3. 불일치서류거절의 적시성과 사기의 예외

본 사건에서 발행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에 불일치서류에 대한 공방은

(1) 불일치서류에 대한 거절통지의 적시성, (2) 근거거래의 사기성의 2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 (1) 불일치서류거절의 적시성

불일치서류에 관한 문제는 문제의 제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은행은 서류의 거래원칙에 따라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문면상 일치하는 경우에 만 지급 등의 약속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문면상 일치여부의 판단은 적절한 통례적 주의를 기울이어 일반적인 육안검사를 통한 서류만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서류의 심사기준이 엄밀일치의 기준에서 상당일치의 개념으로 완화되었다고 하나 실제로 하찮은 타자상의 오류에 대하여도 불일치로 처리하여 지급 등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은 신용장거래의 커다란 장애적 요인으로 받아 드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100%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신용장거래는 결국 발행은행을 필두로 모든 관련은행과 발행의뢰인의 행동양식에 따라 그 거래의 성패가 좌우되는 입지에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장거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거래당사자의 신용을 근거로 하는 국제상거래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용장거래의 촉진제의 역할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상의 지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국제상업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UCP 400 Article 16 (c)에서의 적절한 “통례적 시간”과 UCP 500 Article 13 (b)에서의 7은행영업일 이내의 적절한 “통례적 시간”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이며 서류의 일

36) 신용장조건에 불일치서류라 할지라도 은행이 통례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어 그 서류를 점검하였음에도 이를 적법하게 간과하였다면 이는 발행은행에서 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Howard N. Bennett 교수는 “UCP : Its Present and Future”, *The Korean International Commerce Review*, KAIC, 1995, pp. 43~44에서 밝히고 있다.

치성 심사에서 있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중요한 규정이다<sup>37)</sup>.

본 사건에서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이 할인하여 매입한 서류를 인수하여 지급을 위한 정리를 한 이후 무려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불일치를 통지하여 왔다. 이는 UCP상의 적정한 “통례적 시간”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거래에서의 매입(negotiation)을 위하여 지정된 은행으로서 “선의의 소지자”의 입지에 있으므로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인도의 법원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다.

## (2) 근거거래의 사기성

본 사건에서 인도의 법원은 신용장거래에서 “사기의 예외”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류에서 문면상 사기의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위반을 근거로 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명령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법원은 은행이 사기의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거나 또한 확정적 사기의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이들 계약상의 분쟁은 매매당사자가 직접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은행은 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받아드리고 있다.

인도는 영국의 법리적 운영의 영향을 받아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미국의 유동적인 관점 보다는 영국의 전통적인 관점이 더욱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인도의 법원은 본건에서 사기의 원칙은 매입은행이 사기의 사실을 인지한바 없으므로 받아드려 지지 않

37) UCP 500 Article 14 (e) ; 강원진, 「신용장조건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클레임 처리상의 문제점」, 전계논문, p. 133에서 신속한 통신수단으로 통고하여야 하나 이를 부단히 지연하였다면 신용장조건에의 불일치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 ICC, *opinion(1980-19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Publishing S.A., 1982 p. 21 ; Jaephil Hahn, *The Significanc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UCP Application*, 국제상학 제14권 제1호, 1999. 5. p. 159 & pp. 390-391.



았다.<sup>38)</sup>

본 사건에서 대종을 이루는 법률적 관점은 발행은행의 불일치서류에 대한 지급 거절을 위한 통지를 통례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이 부각되었다. 이로 인하여 발행은행은 서류에 불일치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침묵에 의한 금반언설"이 적용되어 불일치서류에 대한 지급 거절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원진, "신용장조건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클레임처리상의 문제점", 「국제상학」 제9권 제2호, 1994 2호, 1997.
- \_\_\_\_\_,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기재내용과의 일치성 논쟁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1호, 1999. 5
- \_\_\_\_\_, 이상훈, "신용장거래당사자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 14권 제3호, 1999. 11
- \_\_\_\_\_, "신용장조건과 서류심사의 기준검토". 「무역상무연구」, 제 13호, 2000
- \_\_\_\_\_, "신용장심사를 위한 ICC국제표준은행관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2003.
- \_\_\_\_\_, "2002제정 ICC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서류심사사례의 비교 연구", 「국제상학」 제 20권 제2호, 2005.
- 서 정두, "화환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수리거절권의 상실사유", 「무역상무연구」 제10권, 1997.
- 이 천수,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불일치서류처리상의 제 문제", 「국제

---

38) Michael Row, *op.cit.*, p.149.

- 상학」 제12권 제2호, 1997.
- 이대우, “신용장의 서류심사상 Fraud Rule의 적용사례”,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2002.
- 한재필, “신용장거래에서의 ISBP에 관한 연구-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2004.
- 한주섭,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의 원칙에 관한 연구-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15호 제1호, 2000. 5.
- Busto, Richard del., *Documentary Credit : UCP 500 and 400 Compared. -An Article-by-Article detailed analysis of the new UCP 500 compared with the UCP 400-*, ed., ICC, 1993
- Davis, A.G.,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3rd ed., Pitman Press, 1963,
- Ho, P., Barrister at Law “Documentary Credit : The Fraud Exception” *Hongkong Lawyer*, January 1997,
- Margaret L., Moses of Counsel, *Connell Folly Attorney at Law*, undated.
- Morris, R., Consultant, Deacons Graham & James, *file ://B : \Discrepancies has UCP 500 Wrought Any Improvement. htm*
- Richard Morris, Consultant, Deacons Graham & James, “Discrepancies : Has UCP500 Wrought Any Improvement?” (<http://sunzi1.lib.hku.hk/hkjo/view/15/1502320.pdf>)
- Rowe, M., *Letter of Credit*, Euromoney, 1985, [http://www.nolo.com/definition.cfm/Term/ : "Estoppel by silence"](http://www.nolo.com/definition.cfm/Term/Estoppel%20by%20silence)
- UCP 400 \*UCP 500 \*UCC Article 5-114(b) \*Indian Civil Procedure Code
- Banker's Trust Ltd. v. State Bank of India*, [1991] 2 Lloyd's Rep. 443.
- Bolivinter Oil SA v. Chase Manhattan Bank NA* [1984] 1 A11 ER 351.)

*Discount Records Ltd. v. Barclays Bank Ltd.* [1975] 1 W.L.R. 315.

*Engineering Ltd. Barclays Bank International Ltd.*, [1978] Q.B. 159.

*Equitable Trust v. Dawson* (1926) 27 Ll. L Rep 49.

*Gian Singh & Co. Ltd. v. Banque do L'Inochine*, [1974] 1 W.L.R.  
1234.

*Sztejn v. Henry Schroder Banking Corporation*, 31 N.Y.S. 2d 631.  
(Sup. Ct. 1941)

*Federal Bank Lt. v. VM Jog Engineering Ltd.* [2002]4 LRI 204 (Sup.  
Ct. of India), 2004,

## ABSTRACT

### Analysis on Timely Refusal to Accept Discrepant Document in Credit Transactions

-with a special emphasis on *Federal Bank Lt. v. VM Jog Engineering Ltd.*, Indian Supreme Court Decision-

Jae-Phil Hahn

This paper is aiming at analyzing case law of India in relation with reasonable time to make decision whether to accept or to refuse the documents received from the presenter in credit transactions. As specified in *UCP*, the failure to refuse to accept the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precludes the Issuing Bank, Confirming Bank (if any) and Nominated Bank from asserting that they are discrepant.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is Articles of *UCP 500*. The Issuing bank is only to be held responsible for honoring the documents presented by beneficiary through the nominated banks if they are strictly in compliance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s any well experienced banker knows, however, a word-by-word, letter-by-letter correspondence between the documents and the credit terms means a practical impossibility. Thus the notion of reasonable care in conjunction with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mix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has not played a right functional standard for checking the documents as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UCP 500*. And so

the rejection rate is highly estimated at approximately 50% in EU and 40 to 70% according to their geographical locations in the USA. As a result, it can possibly be inferred from this fact that the credit industry would be facing the functional failure as the international trade credit facility, if not supported with motive power as a relevant scheme in UCP 500.

It is quite important to note that UCP 500 Article 13(b) which specify the time limit for the banks to notify the presenter their decision not to accept the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documents would be the motive engine to improve the negotiability of doc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financial facility.

**Key Words** : Reasonable Time; Discrepant Documents; Holder in Due Course; Injunction ; Fraud Exception